통지 ID: **<<Secondary ID>>**

수신: **<<Full_Name>>**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에 CDPAP 프로그램의 개인 활동지원인이셨다면 금전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집단소송 *캘더론 외 대 Public Partnerships LLC* 사건의 화해안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이 이메일 통지서는 본 화해가 귀하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여기에는 귀하가 화해 클래스에서 옵트아웃하지 않을 경우 면책하게 되는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Public Partnerships LLC에 대한 청구 권리도 포함됩니다. **아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화해와 귀하의 선택지에 관한 전체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을 방문하여 전체 화해 통지서를 보시거나 1-800-314-2601로 전화하십시오. 통지서와 기타 정보는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에서 다른 언어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변호사의 수임 권유가 아닙니다. 이 이메일 통지서는 뉴욕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 통지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Public Partnerships LLC가 귀하를 영향을 받은 집단, 즉 "클래스"의 구성원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이메일 통지서를 받으신 것입니다.

클래스에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 언제든지 뉴욕시,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및/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통칭 "다운스테이트 개인 활동지원인")에서 CDPAP의 일환으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주 전역 재정 중개기관인 Public Partnerships LLC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모든 전현직 개인 활동지원인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휴대전화 번호로도 문자 메시지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이 이메일 통지서는 본 소송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법원은 아직 본 화해를 최종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화해가 승인되면 귀하가 옵트아웃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화해에 포함됩니다. 클래스 구성원은 최소 한 차례의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금은 Public Partnerships LLC가 보유한 가장 최근의 은행 계좌 정보를 기준으로 계좌 이체로 지급됩니다. 이용 가능한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지급금은 Public Partnerships LLC에 등록된 마지막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나 지급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화해 관리자인 Atticus Administration에 1-800-314-2601로 연락하십시오.

이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개인 원고 4명, 필립 캘더론, 앨리슨 필즈, 파샤드 핀차시, 데이나 폴가(통칭 "기명 원고들")는 Public Partnerships LLC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때에 정확한 요율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또한 Public Partnerships가 제공한 복리후생이 뉴욕주 재택 돌봄 종사자 임금 형평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클래스를 대표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ublic Partnerships LLC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Public Partnerships LLC는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부인하고 어떠한 위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언제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해 왔다는 입장을 강력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Public Partnerships LLC는 소송이 계속됨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고, 전국의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지원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본 화해에 합의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2026년 5월 1일, 기명 원고들과 Public Partnerships LLC는 화해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양측 모두 추가 소송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을 피하고자 합니다.

본 화해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화해 클래스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이 사건을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소송에서 누구든 특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기명 원고들 또는 Public Partnerships LLC가 승소했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화해입니다. 이는 법원이 어느 당사자를 "승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화해는 무엇을 제공합니까?

본 화해는 다음을 제공하며, 이는 약 200,000명의 다운스테이트 개인 활동지원인에게 분배됩니다.

- 일반 손해배상금 4,050만 달러
- 이전에 최소필수보장(MEC) 플랜에 배정되었던 임금 형평 보상금 2,500만 달러
- 적립된 유급휴가 9,200만 달러(클래스 구성원의 PTO 잔액은 이 분배를 반영하여 정산됩니다)
- 450만 달러의 예비 기금, 그리고
- 2027년 4월 30일 이후 MEC 플랜에 배정된 미사용 자금 전액.

클래스에 대한 지급은 법원이 승인한 소송 비용, 클래스 대리인단 보수, 화해 관리 비용,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각 원고에 대한 봉사 보상금이 지급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Public Partnerships LLC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모든 금액을 나타낸 도표는 여기 [add link]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화해의 일환으로 Public Partnerships LLC는 2026년 4월 30일부로 의무 MEC 플랜을 종료했으며, 클래스에 지급 가능한 모든 구제 금액이 지급되도록 원고들이 법회계 전문가와 함께 MEC 플랜 및 PTO 프로그램에 대한 회계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본 화해를 통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의 요약일 뿐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here에 링크된 전체 통지서와 here에 링크된 화해 합의서를 참조하십시오.

지급금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클래스 구성원으로서 귀하가 받는 금액은 다음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에 재정 중개기관 Public Partnerships LLC에 등록되어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CDPAP에서 근무한 시간, (2) 등록 보너스 수령 자격이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했는지 여부, (3) 귀하의 보수 중 MEC 혜택에 배정된 금액, (4) 귀하의 보수 중 PTO에 배정된 금액 및 PTO 잔액에 남아 있는 금액.

세금이 부과됩니까? 부과된다면 누가 납부합니까?

예. 화해 기금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ere에서 볼 수 있는 전체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화해에서 제가 면책하는 청구는 무엇입니까?

본 화해가 제공하는 혜택의 대가로, 클래스 구성원은 본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청구를 면책하고, 동일한 청구 및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6월 23일 사이의 모든 임금 및 근로시간 청구에 대해 향후 Public Partnerships LLC와 관련 법인 및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공정근로기준법(FLSA), 뉴욕주 노동법(NYLL), 재택 돌봄 종사자 임금 형평법에 따른 모든 청구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위 면책에 연방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규율하는 법률인 FLSA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화해에서 옵트아웃하지 않고 법원이 화해를 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2026년 6월 23일까지의 FLSA에 따른 Public Partnerships LLC에 대한 모든 청구를, FLSA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청구 가능한 배액배상금을 포함하여 면책하게 됩니다.

면책의 전체 범위를 확인하시려면 전체 통지서 [add link] 링크 또는 합의서 제VI부 [add link]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이 면책의 범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리자에게 전화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클래스 대리인단에 연락하십시오.

화해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까?

예, 귀하는 옵트아웃하실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하시면 지급금을 받지 못하고 화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구속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에서 옵트아웃하시려면 here에서 옵트아웃 양식을 작성하여 2026년 9월 19일까지 소인이 찍히도록 다음 주소의 화해 관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Public Partnerships Settlement
c/o Atticus Administration
PO Box 64053
St. Paul, MN 55164
1-800-314-260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이 소송의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법원은 화해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정성 심리를 개최합니다. 심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장소: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Courtroom 13B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Y 11201
일시: 2026년 11월 10일 오전 11시.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제안된 화해에 관한 이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집단소송의 화해는 제안된 클래스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결정하므로, 화해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은 법원이 화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참석할 의무는 없으나, 원하시면 자비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자비로 변호사를 통해 본 사건에 출석 신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발언 허가를 요청하여 화해에 관한 의견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화해를 승인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화해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 화해는 무효가 되고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심리 날짜는 클래스

구성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리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을 방문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이 통지서는 제안된 화해의 요약본입니다. 모든 조건이 포함된 화해 전문은 he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 합의서 사본을 받거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다음을 이용하십시오.

- 사건 웹사이트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 방문
- 관리자에게 1-800-314-2601로 전화
- 온라인으로 법원 전자기록(PACER)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법원 서기과(아래 주소)를 방문.

자료	연락처 정보
사건 웹사이트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
화해 관리자	Public Partnerships Settlement c/o Atticus Administration PO Box 64053 St. Paul, MN 55164 1-800-314-2601 PublicPartnershipsSettlement@AtticusAdmin.com
귀하의 변호사	**KATZ BANKS KUMIN LLP** 휴 배런 엠마 월터스 아비 쿠민 111 Broadway, Suite 1403 New York, NY 10006 646-759-4501 PPLSettlementInquiries@katzbanks.com **THE LEGAL AID SOCIETY** 리처드 블룸 리베카 쿡맥 마이클 딜러 B. 프랑코 올샨스키 엘리자베스 세일러 벨키스 가르시아

	리베카 안타 49 Thomas Street, Fifth Floor New York, NY 10013 212-440-4300 civ_hq_employment@legal-aid.org
법원(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Y 11201

전체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www.PublicPartnershipsSettlement.com을 방문하시거나 1-800-314-2601로 전화하십시오.